

한의예·학과 학생 건강관리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·학과 재학생의 건강 증진 및 예방,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한의과대학 재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건강검진) 한의과대학에서는 재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시행하고, 필요에 따라 적절한 경비를 지원한다.

1. 건강검진의 대상은 신입생과 임상실습 진입을 앞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2. 신입생은 입학 전 혹은 입학 후 3개월 까지, 임상실습을 앞둔 재학생은 임상실습 전까지 건강검진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예방접종) 한의과대학에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 후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, 필요에 따라 적절한 경비를 지원한다. 필요한 예방접종 종류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.

제5조(건강검진항목) 다음 각 호의 항목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검진한다.

1. 체위(키, 몸무게, 비만도, 시력)
2. 신체검사
3. 흉부 X-선 검사
4. 전혈구검사
5. 간염검사(A형, B형)
6. 기타

제6조 (의료기관 이용)

1. 한의과대학 학생이 건강상의 이상이 생기면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을 이용하도록 하며,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한다.
2. 학생이 외부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, 이용할 수 있는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의료기관 이용을 돕는다.

제7조 (안전관리)

- ① 학생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, 특히 기초의학 실습이나 임상실습 중에 손상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, 가운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.
- ②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는다.
- ③ 감염성 혈액이나 체액에 접촉한 경우 실습기관의 해당부서에 보고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받고 한의과대학 행정실에 보고하며 행정실장은 관련사항을 부학장에게 즉시 보고한다.
- ④ 교육 및 학업 관련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대구한

의대학교에서 체결한 '경영자배상책임보험'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한다.

제8조(정신건강) 한의과대학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 및 상담은 필요할 경우 학생상담센터가 담당한다.

제9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한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) 이 지침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